행정명령서

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
가. 처분대상 시설·업종 : 붙임

나. 처분기간 : 2020. 12. 15. 9시 ~ 2021.1. 3. 24시

다. 처분내용 : 붙임

라. 처분이유

- 김제시 환자 증가 추세와 집단감염 양상을 반영하여 2.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

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 제1항 각 호

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제7호

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 제2항 , 제4항

아. 손해배상 :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 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

2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수 있습니다.

<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>

	대상자	1회 위반	2회 위반	상한액
전원등	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	50만 원	100만 원	100만 원
방역지침	시설·장소의 운영자·관리자	150만 원	300만 원	300만 원
위반	시설·장소의 이용자 버스·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	10만 원	10만 원	10만 원

- 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4. 처분 총괄담당자

이 름	소 속	직 급	연 락 처
이영석	김제시청 안전재난과	지방시설사무관	063-540-3303
양우자	김제시청 안전재난과	지방행정주사보	063-540-3427

2020. 12. 15.

김제시재난안전대책본



김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2단계→2.5단계

참고1

시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시설별·활동별 방역수칙

□ (용어정의) <mark>기본수칙 :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관리, 소독·환기</mark> 핵심 방역수칙 : 기본수칙 + 업종별 추가 방역수칙

-	구 분	2단계	2.5단계
모	임·행사	O 100인 이상 금지 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	O 50인 이상 금지 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종	교시설	○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% 이내로 인원 제한, 모임·식사 금지, 숙박행사 금지, 핵심방역수칙(=기본수칙+최소 1m 거리두기) 의무화	○ 비대면원칙, 모임·식사 금지, 숙박행사 금지, 액심방역수칙(=기본수칙+ 최소 1m 거리두기) 의무화
		<중점관리시설 9종> ★ 유흥시설 5종(콜리텍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,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식당·키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 ★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내에 없음	<중점관리시설 9종> ★ 유흥시설 5종(콜리텍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,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흥보관, 노래연습장, 식당·키페(일반음식점·큐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 ★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내에 없음
	중점 관리 시설 (9종)	○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(=기본수칙 + 업종별 방역수칙)	○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(=기본수칙 + 업종별 방역수칙)
		○ (업종별 방역수칙)	○ (업종별 방역수칙)
		▶ (유흥시설 5종) <mark>집합금지</mark>	▶(유흥시설 5종) <mark>집합금</mark> 지
다 중 이		▶ (방문판매홍보관) 노래·음식제공 금지, 시설 면적 <mark>8㎡</mark> 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21~05시 운영 중단	▶ (방문판매홍보관) <mark>집 합금지</mark>
용 시 설		▶ (노래연습장) 21~05시 운영 중단, 이 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재사용, 시설 면적 4㎡당 1명 으로 인원 제한, 음식 섭취 금지	▶ (노래연습장) <mark>집합금지</mark>
		▶ (식당·카페: 일반·유흥음식점, 제과점 영업) 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, 음 식점은 21~05시 포장·배달만 허용	▶ (식당·카페: 일반·유흥음식점, 제과점 영업) <mark>시설 면적 8㎡당 1명 으로 인원</mark> 제한, 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, 음 식점은 21~05시 포장·배달만 허용
	일반 관리 시설 (14조)	<말반관리시설 14종> * 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, 직업훈련기관,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피크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(집단운동 포함), 독서실·스터디키페, 상점·마트·백회점(종합소매점, 300㎡ 이상)	>일반관리시설 14종> * 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, 직업훈련기관,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(집단운동 포함)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상점·마트·백회점(종합소매점, 300㎡ 이상)
	(14종)	○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(=기본수칙 + 업증별 방역수칙)	○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(=기본수칙 + 업종별 방역수칙)

구 분	2단계	2.5단계
	○ (업종별 방역구칙)	○ (업종별 방역수칙)
	▶ (결혼식장, 장례식장) 개별 결혼식, 장 례식 홀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	▶ (결혼식장, 장례식장) 개별 결혼식, 장 례식 홀 당 <mark>50명 미만</mark> 으로 인원제한
	▶ (목욕장업) 음식 섭취 금지, 시설 면적 8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	▶ (목욕장업) 음식 섭취 금지, 시설 면적 16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
	▶ (오락실·멀티방) 음식 섭취 금지, 시설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	▶ (오락실,멀티방) <mark>21시~05시 운영중단,</mark> 음식 섭취 금지, 시설 면적 8m ² 당 1명 으로 인원 제한
	 ▶ (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) 음식 섭취 금지 ● 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,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~05시 운영 중단 중 한기지 준수 	▶ (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) 음식 섭취 금지 ●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, 21시~05시 운영 중단
	▶ (등교) 밀집도 1/3원칙 (고등학교 2/3, 최대 2/3내에서 운영가능)	▶ (등교) <mark>밀집도 1/3준수</mark>
	▶ (이·미용업)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	▶ (이·미용업)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, 21시~05시 운영 중단
	▶ (영화관) 음식 섭취 금지, 좌석 한 칸 띄우기	▶ (영화관) 음식 섭취 금지, 좌석 한 칸 띄우기, <mark>21시~05시 운영 중단</mark>
	▶ (공연장) 음식 섭취 금지, 좌석 <mark>한 칸</mark> 띄우기	▶ (공연장) 음식 섭취 금지, 좌석 <mark>두 칸</mark> 띄우기
	▶ (PC방) 음식 섭취 금지, 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	▶ (PC방) 음식 섭취 금지, 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, <mark>21시~05시 운영 중단</mark>
	▶ (실내체육시설) 21~05시 운영 중단,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음식 섭취 금지	▶ (실내체육시설) <mark>집합금지</mark>
	▶ (놀이공원·워터파크) 수용가능 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	▶ (놀이공원·워터파크) <mark>21시~05시 운영중단,</mark> 수용가능 인원 1/3로 제한
	▶ (독서실·스터디키페) 음식 섭취 금지, 좌석 한 칸 띄우기(킨막이 있는 경우 제외),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 및 21~05시 운영중단	▶ (독서실·스터디카페) 21시~05시 운영중단, 음식 섭취 금지,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,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
	▶(상점·마트·백화점) 방역수칙 준수	▶ (상점·마트·백화점) 21시~05시 운영중단 (300㎡ 이상)
마스크 착용 의무화	○ 실내 전체,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	○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
스포츠 행사	○ 관중 수 제한(수용 가능인원 10%) (기본수 칙 철저 준수 권고)	○ 무관중 경기
국·공립시설	○ 인원 제한(수용 가능인원 30%) - 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는 <mark>운영 중단</mark> (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)	○ 인원 제한(수용 가능인원 30%) -체육시설,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는 운영 중단(기본수직 철저 준수 권고)
사회복지 이용시설 (어인이집포함)	○ 이용 정원의 50% 이하(최대 100인)로 운영 *시회복지시설 단계별 운영 기이드라인 참조	O 이용 정원의 30% 이하로 운영 * 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

구	분	2단계	2.5단계
	징 공	○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	○ 인원의 1/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
기관, 기업	민 간	○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	O 좌동